각종위원회 규정

2024. 2. 21　　이사회 승인　제정

제 1 장　총　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남원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
1. 운영위원회
2. 여성체육위원회
3. 그 밖의 본 회에서 필요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

제 2 장　각종위원회 구성 및 회의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2명
3.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제4조(위원의 위촉 등)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관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본회 직원을 간사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회 선임당시 직위 변동에 의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. 다만, 체육단체 및 유관기관 직위 변경에 한한다.
5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6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8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제척 및 기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2조(경비의 지급)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수당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. 단,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지급은 별표 기준으로 지급한다.

제 3 장　각종위원회의 기능

제13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(결)산 심의에 관한 사항
2. 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
3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제14조(여성체육위원회) 여성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여성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
3. 여성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
4. 여성체육 개발에 관한 사항
5. 여성체육에 육성에 필요한 사항

부　칙 (제정 2024. 2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 표〕

각종 수당지급 기준

구분	지 급 기 준	지 급 대 상	비 고
지급기준 및 지급수당	❍ 기본수당 : 70,000원 ❍ 초과수당 : 30,000원 ※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- 기본수당 : 2시간 이내 - 초과수당 : 2시간 초과	❍ 각종회의 및 위원회 참석자 ❍ 각종위원회 현황 ① 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인사위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여성체육위원회 ⑤ 그 밖의 본 회에서 필요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	